

- 재난안전분야 담당자 교육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-

2015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무자 교육 계획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)」에 의거 **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**

I 교육 개요

□ 법적 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9조의2 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)
 -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
 - **정당한 사유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징계요구**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 제37조의 2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
- 2015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 (국민안전처, '15. 2.)

□ 의무이수 세부기준 및 인정시간

교육구분	교육시기	의무이수 시간 (집합교육 기준)	비고 (교육이수 예시)
관리자 전문교육	• 신규교육 : 1년 이내 • 정기교육 : 매 2년마다	4시간 이상	• 사이버(4시간→2시간 인정) • 집합교육(2시간)
실무자 전문교육		12시간 이상	• 사이버(12시간→6시간 인정) • 집합교육(6시간)

※ 교육방법: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, 자체 직장교육, 워크숍 등 가능

(단, 사이버교육은 교육의무 이수기준의 50% 이내만 인정)

- 관리자 전문교육 :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(국·과장)
- 실무자 전문교육 :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 실무자(팀장 이하)

□ **우리 구 의무대상자(관리자 및 실무자): 50명(관리자 14, 실무자 36)**

-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 - 중앙 및 지자체의 안전책임관(CSO) : 안전건설교통국장
 -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장 및 실무자(13개 부서, 33명)
 -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부서 전 직원(안전관리과) : 16명
- 교육이수 현황
 - 관리자 : 14명 이수 (성동포럼- “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안전과 바람직한 위기 관리”)
 - 실무자 : 6명 이수(30명 미이수)

II 실무자교육 운영 계획

- 일 정 : 2015. 11. 12.(목) 10:00 ~ 17:00(6시간, 중식시간 제외)
- 장 소 : 성동생명안전배움터
- 대 상 : 30명(교육미이수자)
- 강 사
 - 은종화 교수 : 충남대 국방연구원 연구위원
 - 김혜미 강사 :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전임강사(한국라이프세이빙 소속)
- 세부 내용

시 간	강의 내용	비 고
10:00 ~ 12:00	심폐소생술 · 응급처치 교육 및 체험	김혜미
12:00 ~ 13:00	점심	
13:00 ~ 15:00	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위기 관리	은종화
15:00 ~ 17:00	재난대응 사례 연구	

Ⅲ 소 요 예 산

- 총 예 산 : 금610,000원(금육십일만원)
 - 강사료(1명): 1시간 250,000 + (초과1시간 x 120,000) x 3시간
- 예산과목 : 안전관리과, 재해 및 재난예방, 재난예방, 재난예방관리사업(보조), 일반운영비, 행사운영비(201-03)

Ⅳ 기 대 호 과

- 실무부서 재난대응역량 강화: 재난관련부서 담당자 인식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로 선제적 재난예방
- 기능별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로 안전특별구 구현 : 부서별 기능인지 및 협력 강화로 근원적 재난예방 행정기반체계 구축

Ⅴ 행 정 사 항

- 총 무 과 :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요청(6시간)

- 붙 임 1. 재난안전 전문교육 의무대상 부서 1부
2.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무자 교육대상 1부. 끝.